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방위산업 수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자원관리실에 2025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방위산업수출기획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2명(5급 2명)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감축하고, 국방부 소속기관인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6급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명(나군 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부정당 조달업체 제재 등 체계적인 계약심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법무관리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4.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체계적인 계약심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분장사무의 소관을 기획조정실 하부조직에서 법무관리관 하부조직으로 조정하면서, 법무관리관 하부조직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국방분야 송무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송무소청팀을 신설하며, 감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국립서울현충원)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직렬을 조정·통합하는 등을 통해 인사운영의 융통성을 제고하며,

국방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30. ~ 4.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4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법무담당관 및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을 “군사법정책담당관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및 송무소청팀장”으로, “법무담당관은”을 “군사법정책담당관은”으로, “기술서기관”을 “기술서기관으로, 송무소청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담당관”을 “군사법정책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및 소청과 관련된”을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징계”를 “군인 · 군무원의 징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국방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의 재심사제도 운영

⑤ 송무소청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1. 국방부 송무정책의 수립 및 소송 분석
2. 국방 소송업무의 지휘 · 감독 및 총괄 · 조정
3. 국방부 국가 행정소송의 수행 및 신청 사건 처리에 관한 업무

4. 국방부 헌법재판에 관한 업무

5. 군인 · 군무원의 소청에 관한 업무

6.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국방부 계약심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제6조제2항 중 “직무감찰담당관 · 회계감사담당관 · 군수감사담당관 및 국방민원상담센터장”을 “직무감찰담당관 · 종합감사담당관 · 사업감사담당관 및 국방민원센터장”으로, “직무감찰담당관 · 회계감사담당관 · 군수감사담당관은”을 “직무감찰담당관 · 종합감사담당관 · 사업감사담당관은”으로, “국방민원상담센터장은”을 “국방민원센터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계감사담당관”을 “종합감사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회계감사계획”을 “종합감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회계감사”를 “종합감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감사담당관”을 “사업감사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군수 · 정보화분야 및 계약원가”를 “군수 · 정보화 · 시설 · 복지 · 환경 · 군사시설보호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군수 · 정보화 · 계약원가분야”를 “군수 · 정보화 · 시설 · 복지 · 환경 · 군사시설보호분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방민원상담센터장”을 “국방민원센터장”으로 한다.

3. 소관분야 감사결과 처분관리 및 전산화

4. 소관분야 하명 · 이첩 · 민원감사계획의 수립 · 실시

5. 소관분야 감사자료의 수집 · 관리 및 전산화

제9조제5항 중 “제8호까지, 제16호부터 제23호까지”를 “제8호까지”로 한다.

제11조제20항제4호 중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방위산업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방과학기술”로 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방위산업수출기획과) 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별표 1 중 총계 “679”를 “6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71”을 “668”로 하며,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14”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호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14”을 신설하며,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5”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호주사보 · 위생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5”를 신설하며,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임업서기 · 방재안전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호서기 55”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임업서기 · 시설서기 · 방재안전서기 · 전산서기 · 방호서기 · 위생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55”을 신설하며,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임업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10”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임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 전산서기보 · 방호서기보 · 위생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을 신설하며, 기계운영서기보 “5”를 “3”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37”을 “26”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681”을 “678”로 하고, 일반직 계 “673”을 “670”로 하며,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16”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호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16”을 신설하며,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호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5”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환경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호주사보 · 위생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5”를 신설하며,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임업서기 · 방재안전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호서기 55”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서기 ·

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전산서기·방호서기·위생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55”를 신설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10”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기보·방호서기보·위생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을 신설하며, 기계운영서기보 “5”를 “3”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37”을 “26”으로 한다.

별표 2 중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를 신설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3”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위생주사보 13”을 신설하며, “행정서기 5”, “임업서기 3”을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운전서기 또는 위생서기 10”을 신설하며, “행정서기보 1”, “공업서기보 1”, “임업서기보 5”, “시설서기보 1”, “운전서기보 3”, “위생서기보 2”를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운전서기보 또는 위생서기보 16”을 신설하며, “기계운영주사 1”, “토목운영서기 1”, “농림운영서기 1”을 각각 삭제하고, 기계운영서기보 “3”을 “2”로 하며, 농림운영서기보 “6”을 “5”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3”을 “2”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영현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학예담당) 1”을 신설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19조제9항, 제20조제6항 및 제20조의2제7항 관련”을 “제19조제9항, 제20조제6항, 제20조의2제7항 및 제20조의3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위산업수출기획과(존속기한: 2025년 4월 30일)

총계	7
일반직 계	7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4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보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

국방부령 제919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전단 중 “국방민원상담센터”를 “국방민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방민원상담센터장”을 “국방민원센터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송무소청팀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송무소청팀장이 법무관리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송무소청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이 보좌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⑬ (생략) ⑭ 재정회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 4. (생략) 5.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국방부 계약심의회 운영 6. ~ 10. (생략) ⑮ ~ ⑲ (생략)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 10. (현행과 같음) ⑮ ~ ⑲ (현행과 같음)
제5조(법무관리관) ① (생략) ② 법무관리관 밑에 법무담당관 및 규제개혁법제담당관 각 1명을 두며, 법무담당관은 영관급 장교로,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법무관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군사법정책담당관·규제개혁법제담당관 및 송무소청팀장 ----- 군사법정책담당관은 ----- 기술서기관으로, 송무소청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③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1. ~ 11. (생략)

12. 행정심판 및 소청과 관련된 업무

13. 징계 관련 업무

14. ~ 17. (생략)

④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1. ~ 11. (생략)

12. 국방부 송무정책의 수립 및 소송업무의 총괄·조정

<신설>

<신설>

③ 군사법정책담당관-----
-----.

1. ~ 11. (현행과 같음)

12. ----- 관련 -----
--

13. 군인·군무원의 징계 ----

14. ~ 17. (현행과 같음)

④ -----

-----.

1. ~ 11. (현행과 같음)

<삭제>

13. 국방부장관이 행한 행정처
분의 재심사제도 운영

⑤ 송무소청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1. 국방부 송무정책의 수립 및
소송 분석

2. 국방 소송업무의 지휘·감독
및 총괄·조정

3. 국방부 국가 행정소송의 수
행 및 신청 사건 처리에 관한
업무

4. 국방부 헌법재판에 관한 업

제6조(감사관) ① (생략)

② 감사관 밑에 직무감찰담당관
· 회계감사담당관·군수감사담
당관 및 국방민원상담센터장 각
1명을 두되, 직무감찰담당관·
회계감사담당관·군수감사담당
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
술서기관으로 보하며, 국방민원
상담센터장은 서기관·기술서
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
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
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
다.

③ (생략)

④ 회계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국방부·소속기관 및 산하단
체에 대한 회계감사계획의 수
립·실시

무

5. 군인·군무원의 소청에 관한
업무

6.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국방부
계약심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제6조(감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직무감찰담당관
· 종합감사담당관·사업감사담
당관 및 국방민원센터장 -----
----- 직무감찰담당관·종
합감사담당관·사업감사담당관
은 -----
----- 국방민원
센터장은 -----

③ (현행과 같음)

④ 종합감사담당관-----
-----.

1. -----
----- 종합감사계획 -----

2. 회계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2. 종합감사 ----- -----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5. 국방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 단체에 대한 시설·복지·환 경 및 군사시설보호분야에 대 한 감사계획의 수립·실시	<삭제>
6. 7. (생략)	6. 7. (현행과 같음)
8. 시설·복지·환경·군사시설 보호분야의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삭제>
9. (생략)	9. (현행과 같음)
⑤ 군수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⑤ 사업감사담당관----- -----.
1. 국방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 단체에 대한 군수·정보화분 야 및 계약원가에 대한 감사 계획의 수립·실시	1. ----- 군수·정보화· 시설·복지·환경·군사시설 보호분야-----
2. 군수·정보화·계약원가분야 의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이 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2. 군수·정보화·시설·복지· 환경·군사시설보호분야----- -----
<신설>	3. 소관분야 감사결과 처분관리 및 전산화

<신설>	4. 소관분야 하명·이첩·민원 감사계획의 수립·실시
<신설>	5. 소관분야 감사자료의 수집· 관리 및 전산화
⑥ 국방민원상담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 다.	⑥ 국방민원센터장-----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9조(국방정책실) ① ~ ④ (생 략)	제9조(국방정책실)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 방위정책관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6호부 터 제23호까지, 제31호 및 제36 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에 관 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 ----- ----- 제8호까지----- ----- ----- ----- -----.
⑥ ~ ㉑ (생략)	⑥ ~ ㉑ (현행과 같음)
제11조(전력자원관리실) ① ~ ㉑ (생략)	제11조(전력자원관리실) ① ~ ㉑ (현행과 같음)
㉒ 전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㉒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 학기술 수출진흥 승인에 관한	4. ----- ----- ----- 따른 ----- -----

업무	--
5. 방위산업 및 국방과학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5. 국방과학기술----- -----
6. ~ 9. (생략)	6. ~ 9. (현행과 같음)
㉑·㉒ (생략)	㉑·㉒ (현행과 같음)
<신설>	제20조의3(방위산업수출기획과) 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79	676	-3
·	·	·	
·	·	·	
일반직 계	671	668	-3
·	·	·	
·	·	·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14	<삭제>	-214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호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신설>	214	+214

기록연구관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주사 보 · 보건주사보 · 환경주 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 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호주사 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5	<삭 제>	-65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주사 보 · 보건주사보 · 환경주 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 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호주사 보 · 위생주사보 또는 방송 통신주사보	<신 설>	75	+75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임 업서기 · 방재안전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호서기	55	<삭 제>	-55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임 업서기 · 시설서기 · 방재 안전서기 · 전산서기 · 방 호서기 · 위생서기 또는 방 송통신서기	<신 설>	55	+55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임업서기보 · 방재안전 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10	<삭 제>	-10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임업서기보 · 시설서기 보 · 방재안전서기보 · 전 산서기보 · 방호서기보 · 위생서기보 또는 방송통신 서기보	<신 설>	10	+10
기계운영서기보	5	3	-2
사무운영서기보	37	26	-11
·	·	·	
·	·	·	

[별표 1의2]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81	678	-3
·	·	·	
·	·	·	
일반직 계	673	670	-3
·	·	·	
·	·	·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공업사무관·임업사무 관·보건사무관·환경사 무관·항공사무관·시설 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전산사무관·방송통신 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16	<삭 제>	-216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 ·공업사무관·임업사무 관·보건사무관·환경사 무관·항공사무관·시설 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전산사무관·방호사무 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신 설>	216	+216

·	·	·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 ·공업주사보·임업주사 보·보건주사보·환경주 사보·항공주사보·시설 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전산주사보·방호주사 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5	<삭 제>	-65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 ·공업주사보·임업주사 보·보건주사보·환경주 사보·항공주사보·시설 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전산주사보·방호주사 보·위생주사보 또는 방송 통신주사보	<신 설>	75	+75
행정서기·공업서기·임 업서기·방재안전서기· 전산서기 또는 방호서기	55	<삭 제>	-55
행정서기·공업서기·임 업서기·시설서기·방재 안전서기·전산서기·방 호서기·위생서기 또는 방 송통신서기	<신 설>	55	+55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u>· 임업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u>	<u>10</u>	<u><삭 제></u>	-10
<u>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임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 전산서기보 · 방호서기보 · 위생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u>	<u><신 설></u>	<u>10</u>	+10
기계운영서기보	<u>5</u>	<u>3</u>	-2
사무운영서기보	<u>37</u>	<u>26</u>	-11
·	·	·	
·	·	·	

[별표 2]

국립서울현충원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u>행정사무관 · 임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u>	· · <u>5</u>	· · <u><삭 제></u>	-5
<u>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u>	<u><신 설></u>	<u>5</u>	+5
·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u>	· <u>13</u>	· <u><삭 제></u>	-13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운전주사보 또는 위생주사보</u>	<u><신 설></u>	<u>13</u>	+13
<u>행정서기</u>	<u>5</u>	<u><삭 제></u>	-5
<u>임업서기</u>	<u>3</u>	<u><삭 제></u>	-3
<u>행정서기 · 공업서기 · 임업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 운전서기 또는 위생</u>	<u><신 설></u>	<u>10</u>	+10

<u>서기</u>			
<u>행정서기보</u>	<u>1</u>	<삭 제>	-1
<u>공업서기보</u>	<u>1</u>	<삭 제>	-1
<u>임업서기보</u>	<u>5</u>	<삭 제>	-5
<u>시설서기보</u>	<u>1</u>	<삭 제>	-1
<u>운전서기보</u>	<u>3</u>	<삭 제>	-3
<u>위생서기보</u>	<u>2</u>	<삭 제>	-2
<u>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u> <u>· 임업서기보 · 시설서기</u> <u>보 · 전산서기보 · 운전서</u> <u>기보 또는 위생서기보</u>	<신 설>	<u>16</u>	+16
<u>기계운영주사</u>	<u>1</u>	<삭 제>	-1
·	·	·	
·	·	·	
<u>토목운영서기</u>	<u>1</u>	<삭 제>	-1
<u>농림운영서기</u>	<u>1</u>	<삭 제>	-1
·	·	·	
<u>기계운영서기보</u>	<u>3</u>	<u>2</u>	-1
·	·	·	
·	·	·	
<u>농림운영서기보</u>	<u>6</u>	<u>5</u>	-1
<u>사무운영서기보</u>	<u>3</u>	<u>2</u>	-1

·	·	·	
<u>전문경력관 나군(학예담당)</u>	<신 설>	<u>1</u>	+1